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5일, 이주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주영의원)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

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해당 기

관의 업무와 책임을 규정하여,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환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법률의 정합성 및 조혈모이식조정기관 관리·감독의 강화 등을 위하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심의대상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대상에 조혈모이식조정기관을 추가하며, 기존에 지정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의 부칙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심의대상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대상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추가하고,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기존에 지정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의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심의대상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대상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추가하고,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을 추가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 장기등”을 “, 장기등(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말초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뇌사자”를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로 한다.

안 제2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제20조의2에 따른

따른 장기이식의
료기관의 지정기
준에 관한 사항

4.5. (생 략)

제10조(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①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
(이하 “국립장기이
식 관리 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
은 보건복지부 소
속 기관 중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관으로 한
다.

② 국립장기이식관
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 및-----

4.5.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①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
(이하 “국립장기이
식 관리 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
은 보건복지부 소
속 기관 중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관으로 한
다.

② -----

-----.

1.2. (현행과 같음)

4.5. (생략)

③ (생략)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준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제20조(장기구득기관)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제4조 제1

항 제1호 나목에 따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생략)

④ ~ ⑧ (생략)

큰 말초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증--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의-----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확인, 검체 채취·이송 지원,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및 조혈모세포 기증자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1. 의료기관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
된 사업을 주된

제20조의2(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_____

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
교법인

2. (개정안과 같음)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은 조혈모
세포 기증을 유도
하기 위하여 기증
자에게 거짓된 사
실을 알리거나, 기
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
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③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은 조혈모
세포 기증을 유도
하기 위하여 기증
자 또는 기증희망
자에게 거짓된 사
실을 알리거나, 기
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

	<u>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조혈모세포이</u> <u>식조정기관에 관</u> <u>한 경과조치) 이</u> <u>법 시행 전에 보</u> <u>건복지부장관으</u> <u>로부터 조혈모세</u> <u>포이식조정기관</u> <u>으로 지정을 받</u> <u>은 자는 제20조</u> <u>의2의 개정규정</u> <u>에 따라 조혈모</u> <u>세포이식조정기</u> <u>관으로 지정을</u> <u>받은 것으로 본</u> <u>다.</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 장기등”을 “, 장기등(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말초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뇌사자”를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확인, 검체 채취·이송 지원,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이하 “조혈모세포이식조정”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를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에게”로, “등록기관의 장은”을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3호 중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이식”을 “장기구득,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으로 한다.

제33조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한 경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를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제7항”을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각각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또는 장기등의 적출·이식 업무”를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이식 업무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각각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9조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제2호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 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 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u>장</u> <u>기구득기관</u>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 정기준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장기</u> <u>구득기관</u> , 제20조의2에 따른 <u>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u> ----- ----- ----- ----- 4. ·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생 략)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 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 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 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4.·5. (생 략)

③ (생 략)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장기구득기관, 제20
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 장기등(제4조제1항제
1호나목에 따른 말초혈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

3.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설>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

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
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
증희망자의 기증 동의·확인,
검체 채취·이송 지원, 조혈모
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
율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이하 “조혈모세포이식조
정”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
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
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
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

	<u>기등기증희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u> ⑤ <u>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 ----- ----- ----- ----- ----- ----- ----- ----- <u>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에게-----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은-----</u> -----

려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0조의2(장기등 기증·적출·
이식통계의 작성·관리)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
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1.·2. (생 략)

3.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
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
는 장기구득기관

4. (생 략)

제31조(비밀의 유지) ① 국립장기
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
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이식의
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장기등 기증·적출·
이식통계의 작성·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뇌
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혈모세
포이식조정기관

4.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의 유지) ① -----

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뇌
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
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
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 · 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
관 · 등록기관 · 뇌사판정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 조사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
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

-----장
기구득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조
정기관-----

-----장기구득, 장기
등의 적출 · 이식 또는 조혈모
세포이식조정-----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에 대한 지원) -----

-----장기구득기관 ·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
-----.

제34조(보고 · 조사 등) ① -----

· 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 · 뇌사판정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 · 뇌사판정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 · 뇌사판정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장기구득
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기
구득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조정
기관-----
-----.

제35조(시정명령) -----

-----장기구득기관 · 조혈모세포이
식조정기관-----

것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6.·7. (생략)

제36조(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
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
증자·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
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
7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②·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한 경
우

6.·7. (현행과 같음)

제36조(지정취소 등) ① -----
-----장기구득기
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 조혈모세포이식조정
에 관한 업무-----.

1. -----제20조제
7항, 제20조의2제4항-----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
기관 ·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
의료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
하여 업무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
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
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 · 뇌사
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
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으
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7조(폐업 등의 신고 · 통보 및
자료이관) ① 등록기관 · 뇌사
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
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장기등기증
자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
록업무,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
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또는
장기등의 적출 · 이식 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장기구득기관 · 조혈모세
포이식조정기관-----

-----.

⑤ -----

-----장기구득기관 · 조혈모세포이
식조정기관-----

-----장기
구득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조정
기관-----.

제37조(폐업 등의 신고 · 통보 및
자료이관) ① -----
-----장기
구득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조정
기관-----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
기등의 적출 · 이식 업무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
무-----

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
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
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
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
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
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
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
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
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
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
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
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
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
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장기구득기
관·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장기구득기관·조혈
모세포이식조정기관-----

-----.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의 명칭 사용금지) -----

-----장기구
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

제5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u>장기구득기관</u>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생략)	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장기구득기관</u> -----<u>·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u>----- ④ (현행과 같음)
--	--